## 농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(송옥주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8242

발의연월일: 2021. 2.23.

발 의 자 : 송옥주 · 맹성규 · 민홍철

박성준 · 서동용 · 양정숙

이성만 · 이수진 · 이원욱

이원택・이수진(비) 의원

(119]

#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2020년 3월, 감사원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안전관리실태 감사 결과 「농약등 및 원제의 취급제한기준(농촌진흥청 고시)」이 불합리하게 운영되고 있음을 지적하였고, 농업진흥청은 이에 대한 후속 조치로「농약등 및 원제의 취급제한기준」에 「화학물질관리법」에 따른 금지물질 및 유독물질에 해당하는 원제는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운반업 허가를 받은 자가 운반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하고 있음.

그러나 감사원이 농약 및 원제 운반과정에서 안전성이 향상되도록 개인보호장구와 응급조치에 필요한 장비 등을 구비하도록 하는 방안 을 마련하도록 지적한 만큼 법률에서 이를 직접 규정할 필요가 있음.

이에 제조업자·원제업자·수입업자 등이 농약 및 원제를 운반하는 차량에 개인보호장구와 응급조치에 필요한 장비를 갖추도록 의무화함으 로써 국민건강상 또는 환경상의 위해 발생을 예방하려는 것임(안 제23조 제6항 및 제40조제2항제5호의2 신설). 법률 제 호

### 농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농약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3조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제7항 및 제8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8항(종전의 제7항) 중 "실시"를 "실시, 제6항의 개인보호장구 및 응급조치에 필요한 장비 등"으로한다.

⑥ 제조업자·원제업자·수입업자·판매업자 및 방제업자는 농약 또는 원제의 유출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농약 또는 원제 를 운반하는 차량에 개인보호장구 및 응급조치에 필요한 장비 등을 갖추어야 한다.

제40조제2항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5의2. 제23조제6항을 위반하여 개인보호장구 및 응급조치에 필요한 장비 등을 갖추지 않은 제조업자·원제업자·수입업자·판매업자 또는 방제업자

#### 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 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3조(농약등의 안전사용기준	제23조(농약등의 안전사용기준
등) ① ~ ⑤ (생 략)	등) ① ~ ⑤ (현행과 같음)
<u>&lt;신 설&gt;</u>	<u>⑥</u> 제조업자·원제업자·수입
	업자·판매업자 및 방제업자는
	농약 또는 원제의 유출로 인한
	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농약
	또는 원제를 운반하는 차량에
	<u>개인보호장구 및 응급조치에</u>
	필요한 장비 등을 갖추어야 한
	<u>다.</u>
<u>⑥</u> (생 략)	<u>⑦</u> (현행 제6항과 같음)
⑦ 제1항의 안전사용기준과 취	<u>®</u>
급제한기준, 제2항 및 제3항의	
교육의 <u>실시</u> 에 필요한 사항은	<u>실</u> 시, 제6항의 개인보
대통령령으로 정한다.	호장구 및 응급조치에 필요한
	<u>장비 등</u>
제40조(과태료) ① (생 략)	제40조(과태료) ① (현행과 같음)
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	2
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	
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	
1. ~ 5. (생 략)	1. ~ 5. (현행과 같음)
<u>&lt;신 설&gt;</u>	5의2. 제23조제6항을 위반하여

	개인보호장구 및 응급조치에
	필요한 장비 등을 갖추지 않
	은 제조업자 · 원제업자 · 수
	입업자·판매업자 또는 방제
	<u>업자</u>
6. • 7. (생 략)	6.•7. (현행과 같음)
③ (생 략)	③ (현행과 같음)